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7. 29.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박 은 정담 당 자김 우 람		044-202-1711 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팀장김 성 훈담 당 자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팀장유보영담당자신하늘		044-202-1820 044-202-181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과 장 김기용 담당자 이성훈	전 화	044-201-3526 044-201-3527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과 장 조 주 성 담 당 자 박사무엘		02-2100-8201 02-2100-8206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임영훈 담당자 나유성		044-200-5770 044-200-5771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 장 이 진 곤 담 당 자 이 종 철		02-2110-4055 02-2110-405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리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자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김포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언급하면서,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속된 방역업무 등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 안전부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1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및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7.24.)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 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 에서 2주간(7.31.~8.14.)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및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 □ 한편, 지난 7월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중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최근	부산	항 에서	외국인	선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기	ㅏ 발	생함에
따라,	중앙	재난연	<u></u> 난전대책	본부는	- 해	양수	산부 (장관	난 문	성혁)로	부터	'선박
입항	전망	및 병) 역수칙	준수	대경	택' 을	보고받고	10	를 논	의하	였다.

- □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하여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 (4.2%)이 입항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한편,











- 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 근로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3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 이에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으며,
 -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 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 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	으나 자국 =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7.		

4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총 14곳**(4,378실)이며, 입소 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양수산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를 운영 중이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설(9개소)은 7월 28일 기준 2,181명 입소 중
 - ※ 입소대상: (복지부) 사증면제, 관광 등 목적 외국인, (해수부) 해외입국 선원,(고용부)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국토부) 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이라크)
 -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2,799실)*를 운영하고 있다.
 - * 7월 28일 기준 901명 입소 중











- □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도 해외유입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애로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만 3925명이 입소하였지만 시설 입소자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내 경찰 인력 배치, 폐쇄회로텔레 비젼(CCTV) 감시, 별도 도시락 식사 제공 등 입소자를 격리·관리 하여, 감염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생활 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95개소, ▲
 종교시설 1,43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2607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5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 171개소 등 86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0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63개소 등 1,7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흡 등 5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2개반, 54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34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06명 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276명,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는 3,6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2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28)는 은행 방문 및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고발 혹은 계도 조치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9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월 28일) 입소 118명, 병원 이송 77명, 퇴소 241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